

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

장애인 주택개조사업

사업 대상 주거약자*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 주택

* 65세 이상,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·보훈대상자(1~7급),
5·18민주화운동부상자(1~14급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제외 대상

- ① 국가·지자체·공공·금융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② 「주택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닌 불법·위법 건축물

사업내용 주택 내 **편의시설·안전장치(출입문, 호출장치 등)**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주택 상태에 따라 **외부 시설(출입로 등)**도 포함하여 맞춤형 설치 지원

접수 기간 2026. 4. 30.(목) 까지

접 수 처 백석2동 행정복지센터

